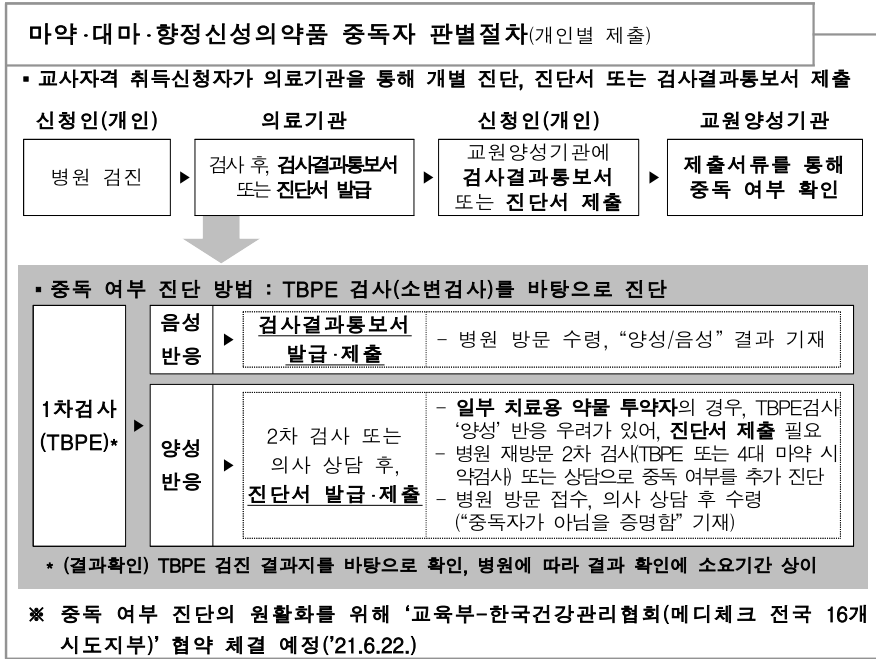


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판별 관련 안내 (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)

□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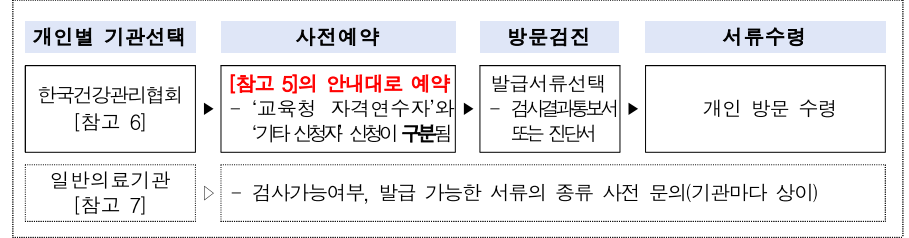
① 제출서류 및 검진 관련 안내

- (제출서류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[참고 2, 3, 4]
 ※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‘양성’반응이 가능하므로,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‘의사의 진단서’를 제출하도록 사전 안내 필요
 ※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(면허 취득, 채용 신청용 등)의 경우, ‘마약류 중독자가 아님’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, 준용 가능
- (서류 유효기간)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 까지 검진·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
 ※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(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, 기타 기관 문의 필요)
 ※ (예시)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'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, '22년 1월~'23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·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

- (검진방법) 소변검사로 실시(혈액, X-ray 검사 방식도 가능)
 ※ (TBPE검사)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(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) (4대 마약 시약검사)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(검사 신뢰도 상승)
- (검진비용) 의료기관별 상이하나, TBPE검사의 경우 ‘검사결과통보서’는 약 5,000원~25,000원, ‘진단서’ 포함 시 약 15,000~35,000원 예상
 ※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
- (검진기관)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,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 등에서 검사 후, 진단서 등 발급 가능(사전예약 필요)
 - (법무부 지정기관)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*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, 검사 가능 [참고 7]
 * www.hikorea.go.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
 ※ 검사결과통보서(=마약검사결과지 등)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,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
 - (한국건강관리협회) '21.6.23. 이후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 ('21.6.22. 교육부와 협약 체결 예정)
 ※ 검사결과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에서 발급 가능 [참고 5, 6]

② [참고] 한국건강관리협회(교육부 협약기관) 검진안내 [참고 5]

- (검진신청)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한해 '21.6.23. 이후 마약류 검사 가능



- ※ (검사결과통보서) 민감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, 개인별 의료기관 방문 수령 필요
- (검진내용 및 비용) 소변검사를 통한 TBPE검사 후, 서류* 발급
 * (TBPE검사+검사결과통보서)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,000원 / 비병행시 6,000원
 → (+진단서) 10,000원 추가

참고 3 **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(안)**

<h2 style="margin: 0;">건강 진단서</h2>							원부대조필 인
병록번호 _____ 연번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- _____							
성명		성별		생년월일		연령	
주소				전화			
병명							
소견	<p>위 사람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</p> <p>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</p> <p>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</p>						
비고							
용도	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			진단일			
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	<input type="checkbox"/> TBPE <input type="checkbox"/> 진단시약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()						
발 행 일 : _____ 의 료 기 관 : _____ 주 소 및 명 칭 : _____ 전 화 및 FAX : _____ 면 허 번 호 : 제 _____ 호 의사성명 _____ (인)							

참고 4 **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(안)**

접수번호					
<h2 style="margin: 0;">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</h2>					
구분	시험시행기관	접수번호	성명		
검사시행			(한글)		
주민번호					
주소		전화번호	집)		
			휴대폰)		
검 사 내 역					
TBPE검사		기준범위			
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.					
2021년 00월 00일					
담당의사: _____ (인)					
의사소견					
종합판정					
판정보류 소견					
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					
2021년 00월 00일					
검사 기관 (인)					
사용제한	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도 외 專用(전용)금지				

※ 결과통보서는 기관마다 발급가능여부가 상이하므로, 사전 확인이 필요(교육부 협약 체결에 따라 전국 '건강관리협회-메디체크'에서 발급 가능, [절차는 \[참고 5\] 참조](#))

※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,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

참고 5 한국건강관리협회(메디체크) 결격사유 검진 방법

▪ 검사결과 통보 방법이 상이하니, 수검자의 소속 또는 자격취득 상황에 따라 반드시 아래 예약명으로 예약해야 합니다.

□ 기타 교사자격취득자의 예약명(대학원 등을 통한 자격취득 현직교원 포함)

수검자 소속	예약명	비고
교육대, 사범대, 일반대 교육과,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, 전문대, 산업대, 방통대, 기타양성대학 (대학생, 현직교사 포함)	교사자격취득용 검사-대학 (대학명이 아님. '대학'으로 예약)	검사결과 통보서 방문수령

[한국건강관리협회 예약 사례]
 충북의 00사범대학생 또는 서울의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하려는 교사
 - “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신청합니다. ‘대학’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.”

참고 6 한국건강관리협회(메디체크) 전국 지부 현황

연번	지부명	주 소	연락처
1	서울 서부	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35 (화곡6동 1097)	02-2600-2000
2	서울 동부	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(용두동 112-1)	02-3290-9800
3	서울 강남	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(신천동 7-18) 롯데캐슬프라자 5층	02-2140-6000
4	부산	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145 (온천2동 1438-2)	051-553-6400~4
5	대구	대구시 동구 장등로 16 (신천동)	053-757-0500
6	인천	인천시 미추홀구 독배로 500 (송의동 163-22)	032-890-8700
7	울산	울산시 중구 변영로 360 (학산동 75-5)	052-241-2000
8	경기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(조원동 779)	031-250-5800
9	강원	춘천시 남춘로 50 (효자2동 363-7)	033-260-0800
10	충북·세종	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(봉명동 725)	043-297-1100
11	대전·충남	대전시 서구 계룡로 611 (탄방동 90-8)	042-532-9890
12	전북	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40 (덕진동1가 1408-3)	063-259-8900
13	광주·전남	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32 (농성동 638-11)	062-363-4040
14	경북·대구	대구시 북구 팔달로 23(노원동3가 523-3)	053-350-9000
15	경남	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07 (양덕2동 524-2)	055-259-0100
16	제주	제주시 연북로 111 (연동 1375)	064-740-0200

※ 한국건강관리협회(메디체크) 홈페이지 : <http://www.kahp.or.kr>